

Journal of KIIT. Vol. 12, No. 8, pp. 85–92, Aug. 31, 2014. pISSN 1598-8619, eISSN 2093-7571 **85** http://dx.doi.org/10.14801/kitr.2014.12.8.8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 분석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

이 선 영*

Analysis of User's Recogni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and New Policy

Sun-Young Lee*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요 약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하도록 개인 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동의서에 나타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함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의 동의하에 다른 곳에서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2차 이용이 일상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과 현실 사이의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이용자가 읽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regulates user's agreement to collect and use user's personal information for privacy protection. Service providers must get user's agreement to collect and use user's personal information. Also, they must inform users how to be used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users have not the least idea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it results in 2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user's agreement. To find a cause of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we analyzed user's recogni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We illuminated the problem that most of users click "I agree" without rea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and analyzed the cause of this problem. We determined that user's right on personal information law is infringed through these problems. We proposed new policy based on our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2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questionnaire survey, new policy

- *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 접 수 일: 2014년 07월 07일
- · 수정완료일: 2014년 08월 04일
- · 게재확정일: 2014년 08월 06일
- · Received: July 07, 2014, Revised: Aug. 04, 2014, Accepted: Aug. 06, 2014
-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Soonchunhyang-ro 22, Shinchang-myeon, Asan-si, Chungnam-do, 336-745, Korea, Tel.: +82 41 530-1357, Email: sunlee@sch.ac.kr

1. 서 론

최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의 금 전적 피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 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응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1]. 이러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유출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동의하에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정보공유에 의하여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정보가 사용되기도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홍보 활동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팸이 되 고, 불필요한 통화 및 이메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결 과를 가져 온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럽에서 만 19억 유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2].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사용 범위 를 결정한다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공유를 방 지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범위를 인지 하여 정크 메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Macdonald 등은 매년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마 주하게 되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약 1,462개임을 계산하였고, Wagstaff는 개인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는데 연간 76일을 소요한다고 하였다[3][4]. 이것 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이 용 동의서를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넘어 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범위, 보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동의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2차 이용이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의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모든 사항에 대해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의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분석 및 해결을 위하여 본 논문에 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 3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설 문 조사 결과, 4장 제안 방법, 5장 결론으로 구성 된다.

II.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2.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개 인정보의 수집,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6]. 개인정보보호법은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 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을 규정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공공부문에서 적용 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 분에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교육법 등과 같이 각 부분별로 각기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다루었으나, 개 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 법과 개별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화하 였다[7].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 용, 제공, 파기의 전체 개별 법률을 통괄하고, 기존 의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2.2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다[5].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가 정보주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개

인정보처리자가 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 리에 대해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 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 람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 가운데 (1)과 (2)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사용자 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1), (2)의 권리를 보장하여야만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는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5][6].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수집된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이용 자의 동의하에 수집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동 의하게 된다.

2.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게 되고 동의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다[6].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동의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III.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및 문제점

3.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정보 주체의 인식에 대한 설문

표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설문 Table 1. Questionnaire for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and for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설문 내용	선택지		
(1) 현재 회원가입이 되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몇 개인가?	① 없음 ② 3개 이하 ③ 5~10개 ④ 10개 이상		
(2) 회원 가입하여 활발 하게 사용하는 사이 트는 어떤 것인가?	① 게임 ② 쇼핑 ③ 포털 ④ 금융 ⑤ 정부·공공기관 ⑥ 대학		
(3) 인터넷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가 나타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동의하는가?	(1) 내용을 자세히 읽고 숙지한 후 동의함 (2) 내용을 읽지 않고 동의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함 (3)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함 (4) 본인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읽어 보지 않고 동의함 (5)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음		
(4) 인터넷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어 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① 내용이 길고 글씨가 많아서 읽기 싫음 ② 동의서에 나오는 용어가 어려움 ③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④ 몇 번 읽어본 적은 있으나 중요한 내용은 없었음 ⑤ "동의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굳이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장에서 보았듯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회원가입할 때 처리방침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용자는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있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무선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20대 청년 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1은 설문조사 내용을 나타낸다.

설문 문항의 (1)과 (2)를 통하여 설문 조사 대상 자의 인터넷 사용 유형을 파악하고, (3)과 (4)를 통하여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설문에서는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제외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 (2)의 활발하게 이용하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제외하였다.

3.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3.2.1 현재 회원가입이 되어 이용하고 있는 인터 넷 서비스는 몇 개인가?

설문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전원이 인터넷 회원 가입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59.7%의 이용자가 10개 이상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회원 가입 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함"을 선택하여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므로 모든 응답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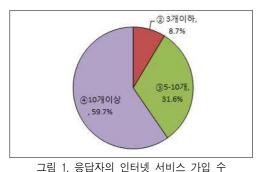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인터넷 저미스 가입 구 Fig. 1. Rate of numbers of internet service sites used by respondents

3.2.2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이트는 어떤 것인가?

대상자들은 포털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쇼핑, 대학, 게임 사이트 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포털사이트는 매우 많은 개인정보 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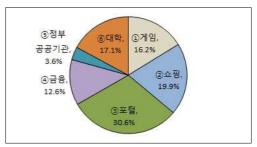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의 인터넷 이용 사이트 분포 Fig. 2. Distribution of internet sites used by respondents

3.2.3 인터넷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가 나타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동의하는가?

이 문항에 대하여 ③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되지 않으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하는 비율이 51.6%, ④본인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읽어보지 않고 동의하는 비율이 24.0%, ②내용을 읽지 않고 동의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1%로 조사되었다. 즉, 응답자의 96.7%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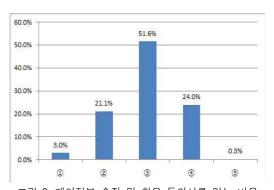


그림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는 비율 Fig. 3. Rate of respondents who read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②와 ④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침을 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에 대한 결과는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이용자에게 제공· 적용하고 있지만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읽지 않음으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거의 인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3.2.4 인터넷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어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지 않고 동의하는 원인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하여 ①내용이 길고 글씨가 많아서 읽기 싫다고응답한 비율이 42.5%, ⑤"동의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굳이 읽을 필요성을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을 차지하였다. 즉, 가독성의 문제와 회원가입 절차 과정에서이용자 선택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용자는 동의서를 읽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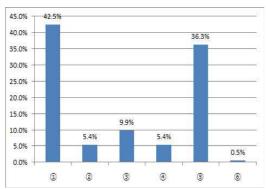


그림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

Fig. 4. Reasons to click "I agree" without reading agreement

3.3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문제점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를 이용하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 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강제적인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용 자의 대부분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 지 않음으로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 되고, 공유되는지 알지 못한다. 또, 다양한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스팸 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를 수신하면서도 그 원인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 출로 인한 것인지 자신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2차이용인지 알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 면 서비스 제공자는 법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만 이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이용자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 의서를 읽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권리의 보장상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상황 Table 2. Current status of user's rights guaranteed by service provider

정보주체의 권리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제공	보장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10	안됨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제공하지 않음	선택권	
동의여부, 동의 범위등을	강제적인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동의"요구	없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보장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제공	보장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제공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 	工设	
따라 구제받을 권리			

표 2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제공"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보장 안됨"은 이

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지 않음으로 하여 그 권리가 보장되 지 못함을 의미하며, "보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지 않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표 2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 공유, 동의범위의 선택 등과 관련되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원인은 첫째, 이용자가 읽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둘째 "동의"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IV.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문제점 해결 방안

4.1 요구조건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의하면 시스템 이용자는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에 의해 시스템을 선택하고 수용한다[8]-[10]. 이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의 이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동의서가 쉽고, 유용해야 이용자가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지 않고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이성 측면에서 정보주체가 충분히읽을 수 있는 양과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용성측면에서는 동의서에 선택항목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대로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보장하여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유용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4.2 용이성 : 필수 항목의 간략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 3자제공 관련 사항이다. 현재 이 항목들은 매우 길게나열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읽기 어렵게 하고 있다. 길게 나열된 사항을 보다 짧고 명료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4.3 유용성 : 정보주체의 선택 동의 인정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읽지 않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동의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함"을 선택해야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의서에서 이용자의 동의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적 동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 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현 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오직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름, 나이, 생일, 거주지 등 거의 모든 개 인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개인의 거주지가 필요하지 않거나, 나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일이나 성별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에도 필수 사항으로서 모두 입력해야만 한다. 이 때,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서비스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는 최소한의 정 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해서도 더욱 잘 인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서비스 제공 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이 용자에게 잘 알릴 것으로 예측된다.

표 3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서 이용자가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항목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항목을 표시하였다.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에서 "○"는 이용자의 강제적 동의를 요구함을 의미하고, "선택"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모든 항목에 대해 강제적 동의를 요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제 3자 공유 등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표3의 동의 받는 방법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의 내용을 인지하는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동의 받는 방법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을 의미하고, "×"는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재 동의 받는 방법 1)은 이용자에게 강제적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가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기 때문에 "×"로 표시하였고, 3)은 이용자가 수집동의서를 읽지 않아 실질적으로 3)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로 표시하였다.

표 3. 동의사항에 대한 선택적 동의 제안 Table 3. Guarantee of optional agreement

필수 항목	현재	제안
수집, 이용,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0	0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0	선택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0	선택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0	선택
동의 받는 방법		
1) 정보주체가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됨 (16조-수집)	×	0
2)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고지 (17조-제공)	0	0
3) 홍보나 판매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22조)	×	0

본 논문에서는 이용자의 선택 동의를 보장함으로 써 동의 받는 방법 1)과 3)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선택 동의 인정을 통하여 표 2에서 현재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될 수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 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 는지 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 개인정보 수 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있다고 보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인식 및 동의서 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일괄적 강제 적 동의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동의서를 읽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 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의 내용을 간략화하고, 수집 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 정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적 동 의를 보장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References

- [1] Hyung-Hyo Lee, "An Alternativ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and Management Framework for Privacy Protection", Journal of KIIT, Vol. 8, No. 6, pp. 49-58, June 2010.
- [2] R. Wauters, "Not spam: estimated cost of 'False positive' junk mail amounts to more than €19.4 billion in Europe alone", http://tech.eu/on/mailjet/, Dec. 2013.
- [3] A. M. Mcdonald and L. F. Cranor, "The Cost of Reading Privacy Policies", I/S: A Journal of Law and Policy for the Information Society, Vol. 4, No. 3, pp. 540-565, Dec. 2008.
- [4] K. Wagstaff, "You'd Need 76 Work Days to Read All Your Privacy Policy Each Year", http:// techland.time.com/2012/03/06/youd-need-76-work-da ys-to-read-all-your-privacy-policies-each-year/, March 2012.
- [5]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Law No.

- 11990, Aug. 2013.
- [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ces", Presidential decree, No. 24425, March 2013.
- [7] "Law of Information Networks and Information Security", Law No.1690, Mar. 2013.
- [8] M. Y. Chuttur, "Overview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Origins,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Sprouts: Working Papers on Information Systems, Vol. 9, No. 37, pp. 1-23, Sep. 2009.
- [9] V. Venkatesh and F.D.Davis, "A model of the antecedents of perceived ease of use: development and test", Decision Sciences, Vol. 27, No. 3, pp. 451-481, June 1996.
- [10] S. Y. Yusafzai, G. R. Foxall, and J. G. Pallister, "Technology acceptance: a meta-analysis of the TAM: Part1", Journal of Modelling in Management, Vol. 2, Issue. 3, pp. 251-280, Dec. 2007.

저자소개

이 선 영(Sun-Young Lee)



1995년 2월 : 부경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2001년 3월 : 일본 도쿄대학교 전자정보공학전공(공학박사) 2004년 3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암호이론, 정보이론,

콘텐츠 보안, 정보보안